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투·개표사무관계자 교육 실시의 근거 마련〉
■ 이달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03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달회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26.
3. 회부연월일 : 2025.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사무를 위하여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미흡하게 하여 잘못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발생한 바 있음.

투표관리관 등 투·개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선거와 관련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4항 신설 등).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투표 및 개표사무를 처리하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경우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 제147조 및 제174조).

현행	개정안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u>④</u>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u>수당</u>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u>⑤</u> ----- -----수당, 교육----- -----.
第147條(投票所の 設置) ① ~ ⑧ (생략)	第147條(投票所の 設置)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u>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u>⑨</u> ----- ----- ----- ----- <u>위촉하여야 하며, 투표사무원에</u>

1. ~ 5. (생략) ⑩・⑪ (생략) 第174條(開票事務員) ① (생략) ② 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③ (생략)	<u>관하여는 제146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u> 1. ~ 5. (현행과 같음) ⑩・⑪ (현행과 같음) 第174條(開票事務員)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위촉하며, 개표사무원에 관하여는 제146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헌행법에서는 투·개표 사무를 관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구·사전투표소마다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두도록 하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¹⁾

1)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②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④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 ⑧ (생략)

⑨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2. 각급학교의 교직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직원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⑩ - ⑪ (생략)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② (생략)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 ⑤ (생략)

⑥ 사전투표소의 설치·공고·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4조(개표사무원)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생략)

현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경우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 중인 투·개표사무관계자 교육 기준》

구 분	교육 횟수	교육 시기
사전투표관리관 ·장비담당사무원	약 5회	선거기간 전 1회, 사전투표일전 2일경 1회, 모의시험 3회
사전투표사무원	약 2회	사전투표일 전일 또는 사전투표일, 모의시험 2회
투표관리관 (직무대행자 포함)	약 2회	선거기간 전 1회, 선거일전 2일경 1회
투표사무원	약 1회	선거일 전일 또는 선거일에 투표관리관이 실시
부서별 개표책임사무원	약 2회	선거기간 중 1회, 선거일 전일 1회
개표사무원 중 투표지분류기운영요원	약 5회	선거일전 30일부터 4회, 선거일 전일 1회
개표사무원	약 1회	선거일 당일 부서별 개표책임사무원이 실시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유권자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잘못된 투표용지를 교부하거나 이중투표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개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개정안은 투·개표 사무를 처리하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경우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투·개표 사무를 처리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하여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원활한 투표 및 개표 과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투·개표 사무의 담당자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입법의 완결성을 위하여 사전투표사무원도 교육대상에 포함하여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관리에 관한 교육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도 관할 위원회에서는 투·개표사무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투·개표사무관계자 교육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지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며,

개정안에는 사전투표사무원 교육에 관한 규정이 빠져있으므로 교육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 교육의 제도화에 따른 추가 예산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²⁾

2)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는 제출되지 않았음.

문 의 처
02)6788-5342